

구미시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
민간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5. 9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핵가족화·맞벌이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로 돌봄서비스 확대 필요
- 나. 아이의 건강한 성장 및 부모의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아픈아이 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사무명 : 구미시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
- 나. 추진근거
 - 1)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
 - 2)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3조
 - 3) 「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」 제10조, 제11조, 제13조
 - 4)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- 다. 위탁사무 :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 전반(2개소)
 - 맞벌이 등 자녀의 긴급 질병 대처가 어려운 가정에 아픈아이 병원진료 동행 등 돌봄서비스 제공

라. 위탁시설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 등)

구 분	구미시아픈아이돌봄센터	구미강동아픈아이돌봄센터
개 관 일	2023. 10. 10.	2026. 1. 1.(예정)
위 치	백산로 19, 1층(송정동)	옥계2공단로 278-17 (구포복지관 2층, 양포동)
면 적	99.2m ²	52.65m ²

마. 위탁기간 : 2026. 1. ~ 2028. 12.(3년)

바. 소요예산 : 340백만원 (도비 30%, 시비 70%) ※ 2026년 기준

사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

아.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 ※ 2025년 제2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

자. 성과평가 결과 : 우수(86점)

3. 부서의견

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법인
(단체)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나. 비용추계서

다. 성과평가 결과

구미시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

1. 평가개요

- 평가기간 : 2025. 7. 9. ~ 2025. 7. 10.
- 대 상 : 구미시 아픈아이돌봄센터
- 위탁기관 : 구미시어린이집연합회
- 대상기간 : 2023. 10. 10. ~ 2025. 6. 30.
※ 위탁기간 : 2023. 10. 10. ~ 2025. 12. 31.
- 평가내용 : 해당 기간 내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 전반
- 평 가 자 : 2명(아이돌봄팀 담당자)
- 평가방법 : 평가표에 의거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

▶ 공통분야 (40점)

- ① 사업계획 :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집행 준수
- ② 인력관리 : 조직·인력관리적정성, 근태관리
- ③ 예산관리 : 예산 및 지출 관리 체계 및 집행의 적정성
- ④ 성과관리 : 사업목표 달성 수준,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

▶ 개별분야 (60점)

- ① 운영관리 : 명부 관리, 어플 관리, 직원 채용, 직원 복지 등
- ② 시설·물품 관리 : 차량 관리, 시설 물품 관리, 돌봄공간 관리, 안전관리
- ③ 사업성과 :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,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

2. 평가결과 및 총평

○ 평가결과

부문		공통분야(40점)				개별분야(60점)		
평가항목 (배점)	총점 (100)	사업계획 (10)	인력관리 (10)	예산관리 (10)	사업관리 (10)	운영관리 (30)	시설·물품관리 (20)	사업성과 (10)
아픈아이 돌봄센터	86	10	9	8	8	25	16	10

○ 총 평

- 맞벌이 가정 및 다자녀, 한부모 가정 아동의 병원동행 및 병상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.
-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.

관계법령

□ 「아동복지법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~ ⑦ 생략

□ 「아이돌봄 지원법」

제3조(아이돌봄 지원의 원칙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.

제4조(국가 등의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□ 「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」

제10조(돌봄지원사업) 시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아픈아이 돌봄서비스 지원사업
2.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 및 부모의 자조모임 지원 등 돌봄사업
3.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1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 아동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조(위탁) ① 시장은 제10조,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지원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거나,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□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의회 동의)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

2.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 3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구미시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과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아픈아이 돌봄사업 추진, 인력 운영으로 재정소요가 예상됨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2026년부터 아픈아이 돌봄센터 설치 예정에 따라 사업 운영비를 산정하였으며,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비용추계의 결과

가. 5년간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은 총 1,805,000천원으로 연평균 361,000천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
나. 2차 연도부터 운영비 매년 인상률 3%로 반영함.

(단위: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출	340,000	350,200	360,700	371,500	382,600	1,805,000

4. 재원조달 방안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비	-	-	-	-	-	-
도비	102,000	105,060	108,210	111,450	114,780	541,500
시비	238,000	245,140	252,490	260,050	267,820	1,263,500
민간	-	-	-	-	-	-
기타	-	-	-	-	-	-
합계	340,000	350,200	360,700	371,500	382,600	1,805,000

5. 부대의견 : 없음

6. 작성자 : 아이돌봄과 아이돌봄팀 이근진(☎480-6542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사 무 명		구미시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	
위 탁 금		1,805,000천원(5년간)	
위 탁 금 세 부 내 역			
기 간	항 목	계(천원)	산 출 내 역
2025년 기준	합 계	340,000	
	인건비	240,000	• 급여 및 제수당 등 : 120,000천원 × 2개소
	운영비	80,000	• 수용비, 공공요금, 차량비, 교통비 등 : 40,000천원 × 2개소
	사업비	20,000	• 홍보비 및 사업비 : 10,000천원 × 2개소

소 관 부 서		아이돌봄과
입 안 자	과 장	박 용 자
	팀 장	김 귀 숙
	담 당 자	이 근 진 (480-6542)